

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7월 12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7월 1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2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(2006. 7. 26) 상정

○ 제129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(2006. 7. 26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김 영 국)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세 신고·납부를 자동이체·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납부 방법을 이용하여 시세 부과·징수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편의시책에 참여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보상점수의 누계가 일정 점수 이상인 사람에게는 현금으로 환산 지급하여 주는 시책을 운영하고,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납세자가 전자납부 등 지방세 편의시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항목별로 부여하는 점수를 보상점수라 하고, 보상점수를 누적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면 현금으로 환산하는 금액을 보상금이라 규정함.
(안 제2조)

- 납세편의 시책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·법인을 대상으로 하되, 특별 징수의무자·국가·시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함.(안 제3조)
- 자동이체신청·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항목별 보상점수 부여 기준을 정함.(안 제4조 및 별표)
- 보상점수는 제한 없이 적립할 수 있도록 하되, 3년 동안 적립하지 아니하면 누적된 점수를 전부 소멸하도록 함.(안 제5조)
- 보상점수는 누적하여 5천점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환산하고, 1천 원 단위로 지급하도록 함.(안 제6조)
- 보상금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)
- 보상점수 부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지급도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)
- 체납자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9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보상금액과 점수가 적어 전시행정으로 보여 지는데? ○ 제도 도입에 따른 조직의 확대 및 예산상의 추가 부담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리시에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운영상 보완점을 규칙으로 정하고 전시 행정이 아닌 실제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 할 것임 ○ 조직의 확대는 없으며 예산상의 추가 부담도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됨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-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는 제도인바, 시 정부에서는 실효성 측면이 보다 강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.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9호
의결 년월일	2006. 7. 27 (제129회)

제출년월일 : 2006. 7. 12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지방세 신고·납부를 자동이체·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납부 방법을 이용하여 시세 부과·징수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편의시책에 참여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보상점수의 누계가 일정 점수 이상인 사람에게는 현금으로 환산 지급하여 주는 시책을 운영하고,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납세자가 전자납부 등 지방세 편의시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항목별로 부여하는 점수를 보상점수라 하고, 보상점수를 누적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면 현금으로 환산하는 금액을 보상금이라 규정함.(안 제2조)
- 나. 납세편의 시책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·법인을 대상으로 하되, 특별징수의무자·국가·시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함.(안 제3조)

- 다. 자동이체신청·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항목별 보상점수 부여 기준을 정함.(안 제4조 및 별표)
- 라. 보상점수는 제한 없이 적립할 수 있도록 하되, 3년 동안 적립하지 아니하면 누적된 점수를 전부 소멸하도록 함.(안 제5조)
- 마. 보상점수는 누적하여 5천점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환산하고, 1천원 단위로 지급하도록 함.(안 제6조)
- 바. 보상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)
- 사. 보상점수 부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지급도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)
- 아. 체납자의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9조)

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세 부과·징수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약하여 납세자에게 환원하기 위한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보상점수”라 함은 납세자가 전자납부 등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항목별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.
2. “보상금”이라 함은 보상점수를 납세자별로 누적 관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100점당 100원의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특별징수의무자·국가·시 및 정부 투자기관 등은 제외한다.

제4조(보상점수 부여 기준) ①보상점수 부여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②시장은 보상점수의 부여를 해당 항목의 수납이 확인된 후 10일 이내에 누적 적립하고, 적립내역을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누적한도와 소멸기준) ①보상점수는 제한 없이 적립할 수 있다.

②보상금 지급분에 대하여는 보상점수에서 빼고, 과세물건 이전 및 주소 변동 등으로 3년 동안 보상점수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점수는 전부 소멸한다.

제6조(보상금 환산) 보상점수는 누적하여 5천점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환산하고, 1천원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7조(보상금 지급) ①시장은 납세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그해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해에 지급할 수 있다.

②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경품 추첨 및 지급) 보상점수 부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보상금 지급 제한) 시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4조의 보상점수 부여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을 신청한 납세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점수를 부여한다.

[별표]

보상점수 부여 기준(제4조 관련)

항 목 별	단 위	보 상 점 수
1. 자동이체 납부		
가. 본세 30만원 이상	건	400
나. 본세 30만원 미만	건	200
2. 인터넷 납부		
가. 본세 30만원 이상	건	200
나. 본세 30만원 미만	건	100
3. 텔레뱅킹 납부		
가. 본세 30만원 이상	건	200
나. 본세 30만원 미만	건	100
4. 지방세 자진납부 인터넷신고	건	200
5. 자동이체 신청	건	200
6. 기타 자료 제공		
가. 이메일 주소	건	200
나. 이동전화 번호	건	200